

## Section III

---

### 학술동향



# 국제무역체제에 대한 경제학 연구의 최근 동향<sup>(1)</sup>

박 지 형

박지형 교수: 앞서 홍재화 교수님께서 ‘국제무역에 대한 경제학 연구의 최근 동향’이라고 소개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약간의 정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해서 ‘국제무역체제에 대한 경제학 연구의 최근 동향’이 오늘 강의의 제목입니다. 국제무역체제가 무엇인가부터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 개관

### 1.1. 국제무역체제

국제무역체제라는 것은 광범위한 개념인데, 국제무역 및 국제무역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협정 및 국제법, 그리고 각국의 통상관련 법률 및 관행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제무역질서를 총괄해서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강의의 주제는 국제무역제도(International Trade Institution)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의 최근 동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 1.2. 다자간 무역협정

국제무역체제에서 중심을 이루는 협정은 다자간 무역협정인 WTO(World Trade Organization; 국제무역기구)를 중심으로 한 협정입니다. 국제무역기구는 1995년도에 발족하였는데, 이 WTO 이전에도 GATT라는 무역협정이 존재했습니다. 이 GATT 협정은 상품무역과 관련된 협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살펴보겠지

---

(1) 본고는 2016년 4월 21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제 11차 경제학의 최근 동향 세미나’에서 필자가 발표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만, 2차 대전 직후 관세(수입상품에 부과되는 세금)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았는데, 여러 보호무역 장벽들을 특히 관세를 중심으로 낮추고자 하는 것이 GATT 체제의 무역협정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협정에는 중심적인 여러 가지 원리들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설명을 드릴 것이고, 이러한 GATT 체제의 상품무역과 관련된 협정이 유지되고 발전된 것이 WTO 체제이며, 따라서 WTO 체제는 GATT 체제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무역과 관련된 협정 이외에도, WTO 체제하에는 여러 종류의 무역협정이 있습니다. 서비스무역이 중요해지면서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라는 서비스무역에 대한 협정이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진행된 GATT의 무역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특히 무역과 관련된 지적 재산권에 대한 협정인 TRIPS(Trade Related Aspec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협정 또한 WTO가 발족하면서 함께 만들어진 협정인데, 이 협정은 단지 관세뿐만이 아니라 지적 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법 제도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GATT를 중심으로 한 국제무역체제가 WTO 체제로 이행된 것과 같이 세계의 무역환경이 변하면서 협정을 변화시키고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변화를 피할 수 있는 협상의 장을 제공하고 촉진시키는 것은 WTO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 외에도 WTO의 중요한 역할은 분쟁의 해결입니다. 어떠한 규정이든 그 규정을 어기는 회원국에 대해서 과연 규정을 어겼는가를 판정해야 되기도 하며, 위반에 대하여 어떤 불이익을 줄 것인가 등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분쟁해결절차가 필요하며, WTO는 정교한 분쟁해결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WTO는 각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원국들에 배포하는데, 세계무역에서의 비중이 가장 큰 4개국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그 다음으로 큰 16개국에 대해서는 4년에 한 번씩, 그리고 모든 다른 회원국에 대해서는 6년에 한 번씩, 각 국가의 통상정책, 무역정책뿐만 아니라 무역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망라해서 WTO의 협정을 적절히 따르고 있는지를 조사해서 발표합니다. WTO는 WTO 체제하의 여러 무역협정이 협상을 통해 만들어지도록 지원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협정에서 파생되는 분쟁의 해결 및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정보를 모으고 배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WTO가 국제무역체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어떻

게 보면 UN(United Nations)도 광범위한 의미에서 국제무역체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대북한 무역제재에 동참하였고, 따라서 UN도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기구이며 국제무역체제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토협약(Kyoto Protocol)이라는 환경 관련 협정 또한 국제무역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광의의 국제무역체제에 포함됩니다.

### 1.3. 지역 기반 무역/경제협정

WTO와 같은 다자간 무역 협정 이외에도 지역에 기반을 둔 무역·경제협정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있는 협정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일 것입니다. 원래 EU는 관세동맹(Customs Union)으로 시작해서 모든 생산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공동시장(Common Market)으로 발전되었고, 지금은 일부 국가들이 유로(Euro)라는 공동통화(Common Currency)를 사용하는 체제로까지 발전했지만, EU의 첫 시작은 관세동맹이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한 남미 5개국이 남미공동시장(MERCOSUR)이라는 이름의 관세동맹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부 무역·경제협정은 꼭 지역에 기반을 했다고 말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한미 FTA가 그러한 예입니다. 한중 FTA는 지역에 기반을 둔 FTA이고,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TA, NAFTA) 또한 지역적입니다. 많은 FTA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자유무역협정들이 존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WTO는 현재 163개 국가가 회원국인데 자유무역협정들은 그보다 훨씬 작은 숫자의 국가들이 회원국입니다. 그 회원국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역정책, 투자정책 및 기타 정책들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제한하고 조율합니다. 따라서 국제무역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국제무역체제의 중요한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정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할 수 있습니다. ASEAN과 APEC은 모두 자유무역협정으로 시작되지 않았지만, ASEAN은 자유무역협정으로 발전되었고, 나아가 공동시장으로 발전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 1.4. Mega FTAs

이제 마지막으로 Mega FTA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협상이 타결되어 많은 관심을 모았던 TPP(Trans Pacific Partnership)가 소위 Mega FTA의 대표적인 예인데, 미국, EU, 중국, 일본과 같은 거대경제권들이 복수로 참여를 하고 단순한 자유무역협정을 넘어서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의 형성을 그 목적으로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FTA와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TPP의 경우 실질적으로 협상이 끝난 상황이라는 하지만 그렇다고 바로 발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상에 참여한 국가들이 모두 의회의 승인과정을 거쳐야 이 협정이 실질적으로 발효되는 것인데 이 과정은 앞으로도 몇 년이 더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TPP 이외에도 미국과 EU가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인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가 있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ASEAN과 아마 다른 3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Mega FTA 체결의 흐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Mega FTA가 특별한 이유는 물론 복수의 거대 경제권이 참여하여 다른 FTA 협정에 비하여 국제무역 및 국제무역체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TPP를 예로 살펴보면 기존의 국제무역체제에 대응하여 ‘새롭게 룰(rule)을 만들어가겠다’라는 내

<p><b>Part I. Commercial Policy: Empirical Facts, Determinants and Effects</b></p> <p><b>Chapter 1:</b> Bown &amp; Crowley, <b>The Empirical Landscape of Trade Policy</b></p> <p><b>Chapter 2:</b> McLaren, <b>The Political Economy of Commercial Policy</b></p> <p><b>Chapter 3:</b> Goldberg &amp; Pavcnik, <b>The Effects of Trade Policy</b></p> <p><b>Chapter 4:</b> Ossa, <b>Quantitative Models of Commercial Policy</b></p> <p><b>Part II. Trade Agreements: Legal Background, Purpose and Design</b></p> <p><b>Chapter 5:</b> Sykes, <b>Legal Aspects of Commercial Policy Rules</b></p> <p><b>Chapter 6:</b> Mavroidis, <b>Dispute Settlement in the WTO: Mind over Matter</b></p> <p><b>Chapter 7:</b> Grossman, <b>The Purpose of Trade Agreements</b></p> <p><b>Chapter 8:</b> Bagwell &amp; Staiger, <b>The Design of Trade Agreements</b></p>	<p><b>Part III. Trade Agreements: Issue Areas</b></p> <p><b>Chapter 9:</b> Park, <b>Enforcement and Dispute Settlement</b></p> <p><b>Chapter 10:</b> Beshkar&amp;Bond, <b>The Escape Clause in Trade Agreements</b></p> <p><b>Chapter 11:</b> Blonigen&amp;Prusa, <b>Dumping and Antidumping Duties</b></p> <p><b>Chapter 12:</b> Lee, <b>Subsidies and Countervailing Duties</b></p> <p><b>Chapter 13:</b> Ederington&amp;Ruta, <b>Non-Tariff Measures and the World Trading System</b></p> <p><b>Chapter 14:</b> Limao, <b>Preferential Trade Agreements</b></p> <p><b>Chapter 15:</b> Ornelas, <b>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for Developing Countries</b></p> <p><b>Chapter 16:</b> Saggi, <b>Trad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b></p> <p><b>Chapter 17:</b> Maggi, <b>Issue Linkage</b></p>
--	--

자료: Kyle Bagwell and Robert W. Strager (eds), Elsevier, forthcoming, 2016.

<그림 1> Handbook of Commercial Policy

용이 협정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Mega FTA는 단지 WTO 체제 하에서 또 하나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아닌 국제무역체제 자체를 그 회원국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TPP 같은 경우엔 미국과 일본이 중심이 되겠죠, 변화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고 아마도 국제무역체제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미국과 EU가 기존의 WTO체제에서 한발 더 나아간 어떤 공동의 룰(rule)을 만들게 될 TTIP 같은 경우에도 국제무역체제에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1.5. Handbook of Commercial Policy

제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광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Handbook of Commercial Policy를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보통 무역정책이라고 하면 관세, 쿼터(quota) 아니면 무역보조금 같은 협의의 무역정책을 이야기하는 반면에, 통상정책(Commercial Policy)이라고 할 때는 무역정책처럼 아주 직접적으로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뿐 아니라, 광범위하게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을 모두 포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Handbook of International Trade Policy가 아니라 Handbook of Commercial Policy라고 명명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핸드북은 앞서 말씀드린 국제무역체제를 이해하기 위해 경제학 분야에서 지난 20~30년간 진행된 연구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핸드북에 Enforcement and Dispute Settlement 장(chapter)의 저자로 참여했는데 2017년 초에 출판될 예정입니다.

이 핸드북 각 장의 제목을 보면 국제무역체제가 그간 어떤 방식으로 학계에서 연구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Chapter 1은 ‘Empirical Landscape of Trade Policy’라는 제목 하에, 전반적인 무역정책 내지 조금 더 광의의 통상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살펴보는 중요한 챕터입니다. 사실 각국의 통상정책 뒤에는 정치경제학적(Political Economy) 변수들이 결정요인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Chapter 2는 이런 요소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Chapter 3는 통상정책들이 실질적으로 경제변수들, 즉 무역과 관련된 상품들의 가격, 사회후생 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분석과 관련된 연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Chapter 4(Quantitative Models of Commercial Policy)는 요즘 국제무역 분야에서 새로운 방법론으로 떠오르고 있는 정량적 방법론이 무역정책에 대한 연구에 어떻게 활

용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Chapter 2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실증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Part 2의 chapter 5, 6을 쓴 두 사람은 국제통상법에 관한 세계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Sykes 교수는 경제학 박사이자 법학 박사이며, 매우 저명한 법학자일 뿐만 아니라 매우 정교한 경제학적 분석도 하며 Mavroidis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Mavroidis 교수는 무역분쟁해결 관련 세계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Chapter 7은 Grossman 교수가 Purpose of Trade Agreements란 제목으로 광의의 무역협정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Chapter 8은 편집자인 Bagwell 교수와 Staiger 교수가 공저를 했는데, 아마도 이 chapter가 전체 핸드북에서 가장 중요한 chapter라고 할 수 있습니다. Design of Trade Agreements, 즉, 국제무역협정의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를 이해하기 위해 진행된 경제학 연구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Part 3의 chapter들은 통상정책에 관련한 각론들에 대한 연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Enforcement and Dispute Settlement chapter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국제무역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두 이슈는 국제무역협정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어떤 내용을 협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느냐하는 부분과, 그 국제무역협정을 어떻게 이행시킬 수 있느냐,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두 이슈 이외에도 국제무역체제에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Escape Clause in Trade Agreement, Dumping and Antidumping duties,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duties, Non-tariff Measures,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for Developing Countries, 그리고 아까 얘기한 TRIPS 관련된 연구들, 미래에 중요해질 Issue Linkage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모든 주제를 오늘 강의를 통해 다룰 수는 없고, 제 자신도 다른 chapter에 대해서는 제한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각 chapter의 저자들은 그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전문가이기 때문에 관련분야 chapter를 저술하게 된 것이고, 저도 지금 대학원과정에서 학생들과 함께 이 핸드북 초고를 읽어가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핸드북이 출간되면 분명히 도서관에도 비치될 텐데 여러분들도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하면,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1995년(제가 박사학위를 받기 전) 지도교수인 Staiger 교수가 본인의 working paper를 학과 세미나에서 발표합니다. 이 논문은 나중에 American Economic Review에 나오고 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페



이퍼가 됩니다. 그 발표가 끝난 직후 제가 지도교수한테 가서, ‘당신이 이 분야를 이제 마무리하는구나, 이제 정리를 해서 끝내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전혀 아니다. 우리(공저자 Bagwell 교수와 함께)들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결국 틀린 거죠. 그 뒤에 이 분야가 국제무역의 중심적인 연구 분야로 떠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번에 핸드북 관련 회의에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통상정책에 대하여 20년 이상 열심히 연구했으니까 이 분야가 완전히 정리되는 핸드북이 되겠구나.’하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는데, 회의를 2번 하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분야는 이제 시작이구나!’ 본격적으로 학문적 연구가 시작된 것이 20~30년 정도가 된 분야이고, 이제 기초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대학에는 통상학과, 무역통상학과들이 있는데, 사실 통상이라는 부분은 이제까지 무역실무로만 여겨졌고, 엄밀한 경제학적 분석의 대상이 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던 편입니다. 그런데 통상정책에 대해서 체계적인 분석을 시작한 지난 20~30여 년 동안 여러 학자들이 관련 연구의 골격을 갖추어왔습니다. 또한 앞서 소개한 통상정책에 대한 연구들은 국제무역분야의 다른 발전의 축과 연결되면서 커다란 발전을 이룰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은희 박사라고 예일대에서 학위를 마치고 메릴랜드 대학에 자리를 잡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출신의 박사가 있습니다. 이 박사가 지난 학기동안 미국의 교수직을 구하기 위하여 많은 학교들을 다니며 국제무역분야의 주요 학자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통상정책 분야가 앞으로 가장 인기 있는 분야 될 거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많은 다른 학자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Handbook of Commercial Policy가 다루는 주제 전체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앞서 설명한 Handbook of Commercial Policy의 목차 중 파란 색깔 있는 부시된 분들, 즉 Chapter 1. Empirical Landscape of Trade Policy, Chapter 8 Design of Trade Agreements, 및 Chapter 8. Enforcement and Dispute Settlement를 중심으로 설명하게 될 것 같습니다. Chapter 1이 다루는 세계의 국제무역정책 현황과 무역정책의 영향에 대한 분석, 이 chapter에 대해서도 사실 단순한 몇 가지 사실만 강조하고 넘어가게 되겠지만, 중요하고 흥미로운 현상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국제무역 협상의 구조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앞서 디자인이라고 한 것과 관련된 부분이며, 마지막으로 Enforcement and Dispute Settlement에 대한 경제학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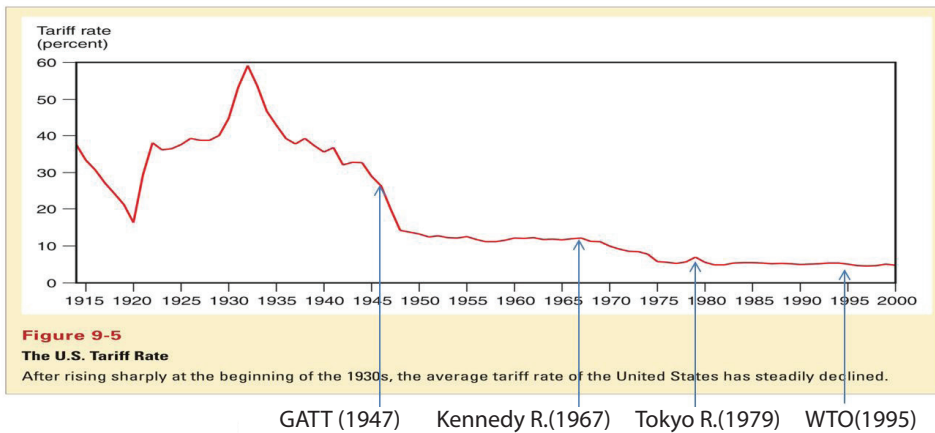
분석을 소개하고, 맺음말을 하면서 다른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하겠습니다.

## 2. 세계무역 정책의 현황 및 경제적 영향

### 2.1. GATT/WTO 무역협상에 따른 관세율의 하락 - 미국의 경우

〈그림 2〉는 GATT/WTO 협상에 따른 관세율의 하락을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GATT는 1947년에 발족을 했고, 미국의 평균관세율이 그 뒤에 급격히 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뒤에도 GATT 체제하에서 다자간 협상이 더 있었고, 그 중 중요한 협상은 1967년에 있었던 케네디 라운드(Kennedy Round)인데, 이 협상이 타결된 직후 상당한 수준의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가 추가적으로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제1, 2차 석유파동(Oil Shock)이 일어나면서 각국의 보호무역 정도가 높아진 다음인 1979년 도쿄 라운드(Tokyo Round)를 통한 다자 통상협상이 있었습니다. 이 협상 직후에는 관세가 다시 떨어졌고, 이후 미국의 경우 약 5% 정도 수준의 평균 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전체적으로 5% 이하의 낮은 평균 관세를 유지하게 된 것은 상당부분 GATT와 그 후신인 WTO가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 2〉는 또한 GATT체제 발족 이전에 대해서도 미국 평균관세율의 변화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실



자료: Krugman and Obstfeld “International Economics” 2009

〈그림 2〉 The U.S. Tariff Rate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20년대에 미국의 관세는 15% 정도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 뒤에 급하게 높아지는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은 대공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이에 대응하는 방법의 하나로 외국의 물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많이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관세가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보호주의의 대두가 2차 대전을 촉발하는 것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2차 대전 후에 전승국들을 중심으로 서로 관세를 낮추고 전후 세계경제체제를 만들기 위해 IMF, World Bank를 발족시켰고, 국제무역질서를 관장하는 GATT도 만들면서 국제경제체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관세율과 관련해서는 위 표에 나타난 미국과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패턴을 보이는데, 선진국들보다 훨씬 더 높은 관세율 수준을 유지하다가, WTO 체제하에서 관세율을 상당부분 낮추는 경향을 보입니다.

위에서 논의한 관세율의 하향 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2.1.1. GATT/WTO와 같은 다자무역협상/협정이 관세율 하락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었는가?

WTO/GATT에 들어서서 어떻게 관세가 하락할 수 있었는가, 다시 얘기해서 다자무역협상협정이 관세율 하락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은 무역협정/협상의 구조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말씀드리면서 얘기하겠습니다.

#### 2.1.2. 관세율의 하락이 국제무역의 증가에 도움을 주었는가?

두 번째 질문은 ‘관세율의 하락이 국제무역의 증가에 도움을 주었는가?’인데, 실제로 이 기간 동안 폭발적인 국제무역량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1940년대 후반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국제무역액의 증가는 대부분 국가에서 각국의 경제성장률을 훨씬 상회하는 매우 높은 증가를 보여주었는데, 과연 이러한 국제무역의 증가가 관세율 하락 때문에 일어난 것이냐, 아니면 다른 요인들이 이러한 국제무역량의 증가를 유도했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을 찾는 연구를 정리한 것이 핸드북의 Chapter 3. Effect of Change in Trade Policy 입니다. 또한, ‘관세율이 낮아진 현재에도 통상정책은 여전히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선진국들은 대부분 굉장히 낮은 실효 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정책이 중요한 것이냐, 이제 거의 자유무역을 하는데 중요해지지 않은 것이 아니

나 라는 질문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답입니다.

일단, ‘관세율 하락이 국제무역의 증가에 도움을 주었는가?’에 대해서 중요한 논문으로 Baier and Bergstrand(2001)의 논문이 있는데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이용해서 많은 연구를 한 Baier, Bergstrand 두 교수가 195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16개 OECD국가들의 무역자료를 이용해서 경제변수 중 어떤 요인들이 무역증가를 가져오게 했는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논문입니다. 이 연구에 의하면, 관세하락이 무역량 증가에 약 25% 정도, GDP 증가가 무역량 증가의 67~68% 정도, 운송비용 감소는 오히려 생각보다 좀 작은 8~9% 정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관세하락의 효과가 GDP 증가보단 작지만 사실 운송비용의 감소보다는 훨씬 큰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GDP 증가 또한 상당부분 무역의 증가에 힘입은 바가 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국제무역이 GDP를 증가시키고, 이 GDP 증가가 다시 국제무역량을 증가시키는 루트는 고려하지 않은 모형이기 때문에, 이 점까지 고려하면 관세 하락의 무역량 증가효과는 25%를 훨씬 더 상회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중력모형은 무역성장의 국가별 분산을 40%정도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역성장의 국가적 분산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최근의 연구인, 2003년의 이계무(Yi) 박사의 논문 또한 매우 중요한 논문인데, 이 연구는 앞서 언급된 무역 데이터를 2000년까지 확대했습니다. 위의 그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1960년대 중반부터 진행된 관세하락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미국이 그렇고 다른 OECD 국가들도 비슷합니다. 관세하락은 11%정도였지만 무역량은 그것보다 훨씬 크게 증가합니다. 관세는 얼마 감소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무역량은 크게 증가할 수 있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계무 박사의 논문은 세계적으로 수직적 분업이 확대된 부분을 강조합니다. 수직적 분업이 확대된다는 것은 한 가지 제품을 생산하는데, 한 국가에서 모든 부가가치(value added)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일부는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그 중간재를 외국에 수출해서 그 국가에서 조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생산요소하고 결합을 해서 최종생산품을 만들고 그 최종재를 다시 한국이 수입을 합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수직적 분업이 진행이 된 경우에는 제품이 국경을 두 번 넘게 되고, 한국이 중간재를 수출할 때 상대국이 이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고 한국이 다시 최종생산품을 수입할 때 또 관세를 부과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국가를 거치는 복잡한 수직적 분업구조가 존재하는 경우, 약간의 관세인하도 결과적으로 굉장히 크게 무역량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이계무 박사의 2003년 논문이 강조하는 것처럼 세계적인 수직적 분업의 확대는 무역량의 확대로 이어집니다. 한 국가에서 모든 부가가치를 생산해서 다른 국가에 수출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한 국가에서 제품의 일부를 만들어 다른 국가에 수출하고 이 국가가 조립 등을 한 후 중간재를 공급한 국가에 재수출을 하고, 이러한 과정이 몇 번 반복되면 단순히 무역총액으로 평가한 무역규모는 매우 커질 수 있지만, 부가가치로 평가한 무역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수직적 분업의 확대가 확대될수록 부가가치 무역으로 국제무역을 분석할 필요성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Yi(2013) 이후의 연구들은 이런 부가가치 무역의 증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최근 Johnson and Noguera(2014)가 1970년부터 2009년까지 부가가치 무역과 무역량 변화를 분석했는데, 이 논문은 수직적인 국제 분업화 정도를 ‘총무역량/부가가치무역액’이라는 간단한 방법으로 측정합니다. 부가가치무역액이 총 무역 대비 작으면 작아질수록 수직적 분업이 국제적으로 더 많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고, 이 변수로 수직적 국제분업화 정도를 측정했을 때 1970년에 2009년까지의 기간 동안 매우 증가했음을 Johnson and Noguera(2014)의 논문은 보여줍니다.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이라는 용어가 뉴스에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된 용어가 되었는데 이것은 국제무역의 수직적 분업화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글로벌 가치사슬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공표되기 시작하면서 이 분야의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EU 의회가 지원하여 만들어진 국제요소산출표(Global Input Output Table)인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포함된 Global Input Output Table을 만들어서 이를 활용해 다양하게 Global Value Chain의 형태를 추적해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제요소산출표를 이용하여 어떻게 국제분업의 수직적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 논문으로 Pol Antràs 교수가 Davin Chor 교수와 함께 쓴 *Econometrica* 논문(2013)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Pol Antràs 교수는 전 세계의 수직적 분업 체계(Global Sourcing 등)에 대한 연구를 지난 수십 년간 해왔고 이 부분에서 세계 최고 전문가입니다. 오는 7월 4일에 Pol Antràs 교수를 무역의 수직적 분화와 관련한 강의를 위해 초대하였는데 ‘Sequential Value Chain’이라는 제목으로 앞서 논의된 글로벌 가치사슬, 수직적 분화 무역(Vertical Specialization Trade)에 대한 포괄적

인 연구흐름과 그 맥을 짚어주는 강의를 할 예정이고 이러한 이론적인 연구가 무역정책과의 관련성이 밀접하기 때문에 제가 초대할 것입니다. 이 분야의 최근 연구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으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 2.1.3. (관세율이 낮아진) 현재에도 무역정책은 중요한가?

미국의 경우를 통해 파악한 바와 같이 많은 선진국들의 경우 매우 낮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율이 매우 낮아진 이후에도 무역정책이 중요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직적인 국제분업구조가 심화되어 있을수록 관세가 조금만 변화해도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추후 보다 자세히 논의되겠지만, 각국은 GATT/WTO 협상을 통해 결정된 최대허용관세율(binding tariff fate) 이하로도 관세를 낮출 수 있지만, 반덤핑관세·세이프가드 등을 이용하여 관세율을 최대허용관세율 이상으로 올릴 수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보호무역정책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2.2. 관세율로 본 무역정책의 근황(Chapter 1: Bown & Crowley, The Empirical Landscape of Trade Policy)

저작권 문제로 이 논문에는 신지 못했지만, Handbook of Commercial Policy의 chapter 1의 그림 2는 이제까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흥미로운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품군에 따라 무역보호수준이 달라지는데, 이 그림 2에서 옆게 표시된 막대의 높이가 최대허용관세율의 상품군 별 평균값입니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WTO 회원국들은 어느 관세 이상으로는 관세를 올리지 않겠다고 협정을 통해서 약속을 하는데, 그 관세보다 낮추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림 2에 표시된 진한 막대들은 상품군 적용관세율(applied tariff rate)의 평균값을 표시하고 있는데 진한 막대 중 맨 왼쪽에 있는 막대가 G20 국가들 중 선진국들의 상품군 별 평균 적용관세율 수준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적용관세율이 최대허용관세율 보다 조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G20 중에서도 신흥국(Emerging Economy)들의 경우에는 최대관세율이 적용관세율 보다 높아 두 관세율간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과잉관세(Tariff Overhang)라고 하는데, 이 과잉관세는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y)으로 가면 더 심해집니다. 경제적 발전수준이 낮을수록 최대관세율과 적용관세율의 차이가 커지며, 과잉관세는 Animal, Vegetable, Food 상품군에서 가장 높고, Textile, footwear 상품군 쪽에서도 매우 높으며, 그 다음 Transportational Equipment 상품군



에서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품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부과된 관세에도 굉장히 차이가 있고, 국가의 경제적 발전단계에 따라서 얼마나 높게 관세를 부과하는가가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으며, 과잉관세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무역정책과 관련한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최근에 논문들이 나오고 시작했는데, 특히 과잉관세 부분을 설명하는 논문은 아직 몇 편 밖에 되지 않고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 2.2.1. 비관세 무역장벽의 중요성 증가

Bown and Crowley의 Chapter 1는 또한 임시 무역장벽인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을 각국이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두 논의할 수는 없지만 무역정책의 세계적 실태와 관련하여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chapter입니다. 국경 내에도 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존재하는데, 공급 쪽에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는 국내보조금, 경쟁정책, 상품 표준, 환경정책들이 있고, 수요에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는 세금, 해외투자관련 정책, 국산부품 사용요건, 소비자 보호 등 많은 국내 정책들(광의의 통상정책)이 속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의 관세율은 많이 낮아졌지만 그와 반대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의 부과율은 매우 올라갔습니다. 일부 학자들의 경우, 선진국의 경우에도 ‘실효적인 보호수준은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관세 장벽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보호무역 정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Handbook of Commercial Policy에는 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된 면책조항보호(Escape Clause Protection)에 대한 chapter가 있고, 반덤핑관세에 대한 chapter도 있으며, 더 광의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다루고 있는 chapter들이 있습니다. 관세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무역정책의 중요성이 낮아진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임시보호(Contingent Protection)가 많아지면서 무역정책이 더 복잡해졌고 과연 이러한 비관세 무역장벽을 어떻게 측정해야 되느냐 또한 중요한 문제이며 앞으로의 연구과제가기도 합니다.

### 3. 무역협상 · 협정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 3.1. 무역협상 · 협정은 왜 필요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

무역협상 · 협정은 왜 필요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현재 까지 Bagwell and Staiger(1999)의 교역조건이론(terms-of-trade theory)이 가장 지배적인 이론입니다. 교역조건이론(Terms-of-trade theory)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논의하겠고, 우선 이 질문에 대한 다른 답으로 제시된 이론들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Maggi and Rodriguez-Clare(1998, 2007)가 제시한 국내약속이론(Domestic commitment theory)은 무역협정이 국내적으로 정책과 관련된 구속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이론입니다. 보호무역 로비에 취약한 정부가 무역협정을 맺게 되면, 이를 통해 자유무역적인 정책 시행한다는 약속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키게 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유무역적인 정책시행을 약속(commit)해야 하는 이유는 시간 비일관성 문제(Time Inconsistency Issue)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 하면, '현재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보호무역정책을 펴지만, 추후에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정부가 원하는 것일 수 있지만 실제로 시간이 흐른 뒤에는 그렇게 못할 수가 있습니다. 수입경쟁산업(domestic import-competing industry)의 보호무역정책을 위한 로비가 존재하고 이를 통해 이 산업이 보호받게 되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이 산업에 유입되면서 더욱 강력한 로비 압력이 작용하게 되어 추진하기로 한 무역자유화를 결국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예상해서 많은 비효율적인 민간 기업들도 계속 그 산업에 남아있거나 더 많은 기업이 외부에서 몰려들게 되는 거죠. 보호무역정책과 관련된 이러한 시간 비일관성 문제는 매우 큰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한 약속(commitment)의 도구로서 국제무역협정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보다 최근 Ossa(2012)는 Firm-delocation Externality Theory라고 하는 이론을 제시합니다. 이 이론은 독점적 경쟁 모형(monopolistic competition model)에 기반하고 있는데, CES 수요함수를 독점적경쟁모형에서 적용하면 각 기업들이 한계생산비용에 어떤 고정된 비율의 이윤 마진(fixed margin)을 추가하여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품가격결정의 메커니즘 때문에 각국이 수입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그 수입관세가 수출하는 기업의 수출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수입관세가



교역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아래에서 논의 될 교역조건이론에 의하면 무역정책이 교역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각국은 무역협정에 참여할 필요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교역조건이론의 핵심주장은 ‘무역협정의 유일한 존재이유는 보호무역정책의 교역조건 외부성(terms-of-trade externality)을 교정하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인데, Ossa(2012)의 모형에는 이러한 교역조건 외부성이 보호무역정책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ssa(2012)는 ‘교역조건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역협정을 할 이유가 존재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Ossa 교수는 런던정경대학(LSE)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시카고대학에 조교수로 부임하였습니다. 지배적인 이론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할 때, 학계는 주목을 하게 되며 이러한 이론은 학문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보호무역정책의 교역조건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형태의 외부성이 존재해야 각국이 무역협정을 통해 이러한 외부성을 교정할 이유가 생깁니다. Ossa(2012)는 이에 대하여 보호무역정책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외부성이 존재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수입관세의 증가는 국내시장에서 활동하는 국내기업의 수를 증가시키고 상대적으로 외국에 존재하는 기업의 수를 감소시킵니다. 시간 관계상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자유진입조건(free entry condition)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렇게 국내기업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국내기업들은 운송료 등의 무역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반면 외국기업들은 무역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국내기업 수의 증가는 국내시장의 가격지수를 낮춥니다. 이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이 외국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가격지수의 변화는 수입관세를 높인 국가에는 이익이고 상대국가에는 손해가 됩니다. 따라서 firm-delocation 외부성의 존재 때문에, 각국이 개별적으로 무역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 전 세계적으로 지나친 보호무역정책의 도입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외부성을 내부화하기 위한 것이 Ossa(2012)가 제시하는 무역협정의 이유인 것입니다. 하지만 교역조건 이론을 제시한 Bagwell 교수와 Staiger 교수는 이 firm-delocation externality 모형이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옳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일 각국이 수입 관세 뿐만 아니라 수출 보조금 내지 수출 세금과 같은 여러 가지 무역 정책의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이 delocation effect는 없어지고, terms-of-trade effect만 무역정책과 관련된 외부성으로 남게 되는 것을 증명합니다.

Atrás and Staiger(2012)는 hold-up 문제가 존재하는 수직적 분업이 두 국가 간에 존재하는 경우 무역정책은 교역조건 뿐 아니라 무역량 변화를 통해 hold-up 문제와 관련된 협상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얘기해서 교역조건 외부성 이외에도 무역정책이 각국의 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무역협상/협정의 이유에 대한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1.1. 교역조건이론(Terms-of-Trade Theory)

이제 교역조건이론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제무역정책은, 예를 들면 관세부과는 교역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 국가가 세계시장으로부터 특정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고려해 봅시다. 그 국가의 경제규모가 매우 작지 않다면 수입관세를 부과해서 이 제품에 대한 국내수요를 줄이면 이는 세계 전체의 수요량 감소로 이어지고, 그에 따라 이 제품의 세계시장가격의 하락이 발생합니다. 각국이 수입상품에 대해 일정 정도의 수요 독점력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세의 부과는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의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만들고, 반대로 이 제품을 수출하는 외국 입장에서는 교역조건이 악화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무역정책의 외부성은 오랜 기간 동안 학계에 이미 알려져 있던 개념입니다. 하지만, Bagwell and Staiger(1999)의 교역조건 이론은 ‘각국이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무역정책이 발생시킬 수 있는 이 교역조건 외부성만이 무역 협상의 대상이다.’라는 주장을 한다는 점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주장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각국이 무역 관세율을 정할 때 관세율을 0이 아니라 높게 정하는 것은 보호무역에 대한 국내의 압박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고, 관세율을 올리면 세계무역 시장에서 각국이 수입하는 제품의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세율을 지나치게 높지게 되고, 이러한 외부효과를 교정하기 위해서만 무역협정을 한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당연한 주장은 아니기 때문에 Bagwell and Staiger(1999)은 다음과 같은 이론적 증명을 제시합니다.

Nash 균형  $Max_{\tau} [W(P, P^W)]$  and  $Max_{\tau^*} [W^*(P^*, P^{W*})]$ , the F.O.Cs are

$$H: \partial W / \partial T = W_p \cdot [dP/dT] + W_{p^w} \cdot [\partial P^w / \partial T] = 0$$

$$F: \partial W^* / \partial T^* = W_p^* \cdot [dP^*/dT^*] + W_{p^w}^* \cdot [\partial P^{W*} / \partial T^*] = 0$$

정치적 최적(Politically Optimal: PO) 관세율 조합

$$H: W_p \cdot [dP/dT] = 0$$

$$F: W_p^* \cdot [dP^*/dT^*] = 0$$

파레토 효율적인 관세율 조합

$$[dP/dT^*]_{dW=0} = [dP/dT^*]_{dW^*=0} \rightarrow (1 - AW_p) \cdot (1 - A^* \cdot W_p^*) = 1$$

where  $A \equiv (1 - \lambda \cdot T)/(W_p + \lambda \cdot W_p^w)$  and  $A^* \equiv (1 - \lambda^* / T^*)/(W_p^* + \lambda^* \cdot W_p^{*w})$

위에 표시된 수식에서  $W$ 는 각국의 Welfare가 아니라, 각국 정부의 Welfare를 나타냅니다. 각국 정부의 welfare는 각국의 welfare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각국 정부의 입장에서 보호무역에 대한 정치적 로비가 존재할 때 관련 산업에 대한 고려가 여타 다른 경제부분에 대한 고려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경우 농산물, 특히 쌀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세는 전체적인 국민에게 크게 도움이 되어서가 아니라 농민들의 압박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보호를 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 표시된  $W$ 는 이러한 정치적 압박을 고려한 정부의 welfare입니다.  $P$ 는 국내 상대가격이고  $P^w$ 는 세계시장에서의 제품의 상대가격입니다. 이 두 개의 가격변수는 경쟁시장 하에서 각국의 welfare를 결정할 뿐만이 아니라 각국 정부의 payoff를 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논의가 외국에도 적용되며,  $P^*$ 는 외국 시장의 현지 가격입니다.

각국은 관세를 결정하는데, 서로 간의 협의가 없는 경우 각각 관세결정과 관련된 일계조건(first order condition)을 만족시키는 관세를 결정합니다. 내가  $T$ 를 결정할 때는 나의 payoff를 최대화하는  $T$ 를 결정할 것이고, 이러한  $T$ 를 결정할 땐 두 가지 고려를 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관세가 국내의 가격비율에 영향을 미치고 그를 통해 나의 welfare에 미치는 영향이고, 또 한 가지는 관세율의 변화가 세계시장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영향을 다 고려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물론 외국의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고려를 통하여  $T^*$ 을 결정합니다.

관세율 결정을 위한 각국의 일계조건을 동시에 풀면 소위 얘기하는 Nash 균형 관세를 찾을 수가 있는데, Bagwell and Staiger(1999)는 관세율 결정과 관련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합니다. 정치적 최적 관세율 조합(politically optimal tariff combination)이라는 개념인데, 이 개념은 각국이 관세율을 결정할 때 세계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국내 정치만 생각을 하고 관세율을 결정을 한다는 가정 하에



선 보다 아래에 표시된 굵은 선이 정치적 최적 반응곡선(politically optimal reaction function)이고, 교역조건에 대한 고려 때문에 각국의 반응곡선은 정치적 최적 반응곡선에 비교하여 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최적 반응곡선들의 교차점인 PO가 정치적 최적 관세 조합인데 Nash 관세조합을 나타내는 N보다 낮은 위치에 있게 됩니다.

Bagwell and Staiger(1999)는 WTO의 협상에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WTO의 협상들은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원칙 하에서 진행이 되는데, 하나는 호혜성 원칙이고요, 또 하나는 무차별성 원칙입니다. 호혜성 원칙이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관세를 낮추어 무역 상대국의 수출을 100만원 늘리도록 허용한다면 상대국도 내가 100만원에 해당하는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관세를 낮추는 것이 호혜성입니다. 이러한 호혜성의 원칙에 따라 협상을 하면서 관세조합을 조정하게 되면 교역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는 것을 Bagwell and Staiger(1999)는 증명합니다. 이러한 호혜성에 원칙에 입각한 무역협상은 대칭적인 국가의 경우 각국이 관세율을 비협조적 균형(non-cooperative equilibrium: N)에서 바로 정치적 최적 균형(politically optimal equilibrium: PO)으로 조정하도록 합니다. 그 이상의 무역자유화는 각국 정부가 모두 다 손해를 보기 때문에 추진되지 않으며, 정치적 최적 관세조합이 협상의 중심점(focal point)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비대칭 국가의 경우에는 협상을 통하여 정치적 최적 관세 조합이 정확히 선택되지 않지만, 이 조합에 근접하게 협상관세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존재하고 따라서, 정치적 최적 관세율 조합이 여전히 협상의 중심점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을 Bagwell and Staiger(1999)는 Nash 협상이론에 근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WTO 협상의 매우 중요한 특징은 양자가 아니라 다자협상이라는 점입니다. ‘다자협상 하에서도 위에서 논의된 호혜성 원칙에 따라 협상을 하게 되면 정치적 최적 관세 조합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Bagwell and Staiger(1999)는 협상에 무차별성 원칙이 적용되면 다자협상의 경우에도 호혜성 원칙에 따른 무역협상을 통해서 정치적 최적 관세가 선택되는 것을 증명합니다. 무차별성 원칙은 최혜국 대우를 의미하는데, 이는 내가 특정 국가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같은 관세가 모든 다른 국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대략적으로 이유를 설명하자면, 무차별성 원칙을 적용 최혜국 대우를 하게 되면, 다자간 무역에서도 각국이 동일한 교역조건을 갖게 되고, 이

를 전제로 하여 호혜성 원칙에 따르는 관세의 조정은 교역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됨으로 앞서 양자협상에서 적용된 논리가 다자협상에서도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 3.1.3. 교역조건이론에 대한 실증분석

교역조건이론은 이론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으나 실제 관세율 결정에 있어서 설명력을 갖는지는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검증하는 논문은 교역조건이론이 나온 시점으로부터 거의 20년 후에 나오게 됩니다. Broda *et al.*(2008)의 논문은 WTO 비가입국들이 무역협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소위 Nash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교역조건이론을 검증합니다. Nash 관세의 경우 비탄력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는 관세부과를 통하여 WTO 비가입국이 그 국가의 입장에서 유리한 교역조건의 변화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경우가 외국이 비탄력적으로 수출품을 공급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Broda *et al.*(2008)은 WTO 비가입국들의 경우에만, 비탄력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대하여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논문은 WTO 협정에서 제외된 상품(예를 들면 농산물과 같이, WTO 협정에서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가 협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에 대한 관세에 대해서 WTO 가입국의 경우에도 그 상품에 대한 시장 독점력이 높을수록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교역조건에 대한 고려가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관세가 아닌 일방적인 관세 결정의 경우에 상당한 수준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반면, WTO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관세의 경우 교역조건에 대한 고려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Bagwell and Staiger(2011)는 WTO에 1995년 이후 가입한 중국을 비롯한 국가들의 가입 전 관세율과 가입 후 관세율을 비교하여 교역조건이론의 예상에 따라 관세 하락이 일어났다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보여줍니다.

GATT와 WTO 협상에 대한 실증분석과 관련하여 굉장히 많은 유용한 데이터가 웹상에 존재합니다. WTO 웹페이지는 여러 데이터를 많이 제공하는데, 몇 년까지 다 공개가 되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GATT체제 하에서의 상당히 많은, 실질적인 협상 내용들이 자세한 수준까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협상 결과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협상 과정까지, 즉 각각의 상품에 대해서 어떤 국가가 어떻게 관세 제안을 했고, 거절당했고 이러한 자세한 협상 과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GATT의 협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Bagwell, Staiger and Yurukoglu(2015)는 교역조건이론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GATT 협상에 다자간



호혜성 원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국가가 협상할 때는 양국 간에만 호혜성이 적용될 수 있지만, A국·B국·C국이 협상을 하는데, A국이 B국한테는 양보를 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줘야하는데 이를 B국을 통해 받지 못하는 경우, 이 B국이 다른 C국에 양보를 해서 이 양보가 A국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런 식으로 호혜성이 맞아진다면, 이것이 다자간 호혜성입니다. 여러 국가가 한꺼번에 협상하면, 양자 사이에는 적용할 수 없었던 다자간 호혜성 원칙에 입각한 협상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Bagwell, Staiger and Yurukoglu(2015)는 이러한 다자간 호혜성 원칙에 따른 협상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증거뿐만이 아니라, GATT·WTO체제 하에서 다자간 협상이 실질적으로 양자 간 협상을 합친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협상을 하고 있었다는 간접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3.2. 관세율 상한(Tariff Binding)과 과잉 관세(Tariff Overhang)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과잉관세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간략히 논의하겠습니다. 무역협정을 맺는 각국 정부가 보호무역에 대한 미래의 정치적 압력이 불확실한 경우, 관세율 상한만을 정하고 관세율을 상한 이하로 내리는 것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고정적인 관세율을 정하는 협정에 비해 무역협정하의 기대이익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보호무역에 대한 정치적 압박과 관련한 미래의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에는 관세의 상한만 정하고 관세의 하방 유연성을 두는 것이 더 나은 협정이라는 것을 Bagwell and Staiger(2005)이 보여주었습니다. 나아가 Amador and Bagwell(2013)은 이렇게 관세율 상한만을 정하는 형식의 계약이 모든 가능한 계약 중에서 가장 최적이라는 것을 일정 조건 하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한 계약 내지 협정 형태를 고려하더라도 WTO 체제의 관세율 상한의 형태로 협정을 맺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Beshkar, Bond, and Rho(2015)는 Bagwell and Staiger(2005) 모형에 국가간 비대칭성을 도입하여 수요 독점력이 약한 국가의 경우 더 높은 관세율 상한을 허용하고, 따라서 더 높은 과잉관세를 갖게 되는 것을 이론적으로 보여주고, 이러한 이론적 예상을 실증분석을 통해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 3.3. 무역협정/협상에 대한 미래의 연구 방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GATT의 무역협상 내용이 WTO의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됨

에 따라, 무역협상에 대한 다양한 이론에 대한 실증분석, 혹은 보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협상이론에 근거하여 실증분석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이론 및 실증분석을 하는 학자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교역조건이론에 대한 논의된 바와 같이 여러 실증분석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다른 이론들, 좀 더 새로운 이론들에 대해서 실증분석은 없습니다. 이러한 실증분석들을 제대로 한다면 세계최고수준의 학술지에, 물론 쉽진 않겠지만 게재될 수 있습니다. 국내약속이론, firm-delocation externality 이론, trade-volume externality과 관련된 실증 분석은 아직 없습니다. 또한 관세율 상한과 과잉관세의 국가별 산업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과 실증분석은 이제 제대로 된 논문이 한두 편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역시 상당히 전망이 좋은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무역이론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연구인 이질적 기업모형에 기반한 New-New Trade Theory과 관련된 연구방향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질적 기업모형에 기반한 무역모형은 지난 10여 년간 국제무역분야를 완전히 지배했고, 국제무역 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분야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근거하여 무역협정·협상 문제를 분석하면 새로운 무역협정·협상에 대한 이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역정책의 결정에 대한 정치 경제학 모형 또한 이질적 기업모형 하에서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4. 국제무역협정의 이행 및 분쟁에 대한 분석

##### 4.1. 무역협정의 이행과 WTO의 역할

Handbook of Commercial Policy의 국제무역협정의 이행 및 분쟁(Enforcement and Dispute Settlement)에 대한 분석, 제가 쓴 챕터이기도 합니다만 국제무역체제의 핵심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 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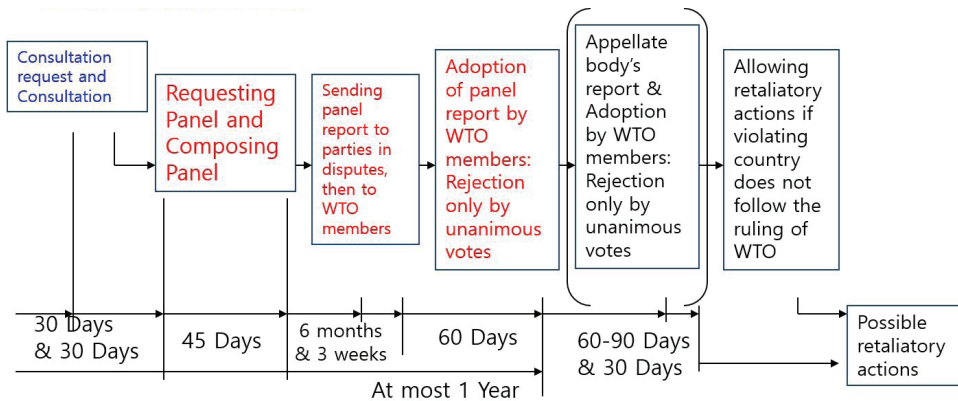
Payoffs (Country A, Country B)		Country B	
		Follow	Violate
Country A	Follow	(10, 10)	(6, 12)
	Violate	(12, 6)	(8, 8)

〈그림 4〉 무역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죄수의 딜레마



협정의 경우 국가 간 협상을 통해 협정만 성사가 된다고 해서 그 협정의 이행이 자동적으로 담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국이 무역협정을 협상해놓고서도 이행을 하지 않을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림 4>에 표시된 보수표(payoff table)가 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협정을 맺은 Country A와 Country B가 모두 무역협정을 이행하면 (10,10)이라는 보수, 즉 Country A와 Country B가 각각 10을 얻습니다. 하지만 Country B가 무역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보호무역정책을 펴면 10보다 큰 12를 얻게 되고 A의 보수는 6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보호무역정책이 지닌 교역조건 외부효과가 이러한 보수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Country A가 무역협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Country A가 이익을 보고 Country B가 손해를 봅니다. 끝으로 두 국가 모두 무역협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면(정적 Nash 균형) 모두 무역협정을 이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두 국가 모두 손해를 보게 되는 소위 죄수의 딜레마 상황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보수표에 나타낸 것과 같은 무역협정이행에 대한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대하여 Dixit(1987)은 반복적 게임이론을 이용하여 협정을 이행시킬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이 있다는 것을 보입니다. 우선 Country A와 B가 위 보수표에 나타난 게임을 반복적으로 플레이하며, 각국은 이 반복게임과 관련된 discounted flow of payoff를 최대화하려고 하고 각국은 현재의 보수와 비교한 미래 보수를 가치를 특정 discount factor로 평가절하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어떤 국가라도 협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하여 Nash 관세조합 즉 (Violate, Violate)를 영원히 플레이하는 방아쇠(trigger) 전략을 이용해 협정불이행에 대응하면, discount factor가 1/2보다만 크면 무역협정을 이



<그림 5> WTO의 분쟁해결절차

행시킬 수 있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국가의 협정불이행에 대하여 피해를 받는 국가가 동일한 협정불이행으로 대응하는 것을 합법화함으로써 WTO는 회원국들의 무역협정 이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형에 따르면 무역분쟁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무역협정이 이행되거나(discount factor가 1/2보다 큰 경우) 이행이 되지 않거나(discount factor가 1/2보다 작거나)입니다. 이 모형에 따르면 협상이 이루어진 경우 무역 분쟁은 없어야 하지만, WTO 회원국들 사이에 협정의 이행여부와 관련된 무역 분쟁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WTO는 정교한 무역분쟁 해결절차를 지니고 있습니다. 위의 표에 나와 있듯이 분쟁이 있을 경우 WTO에 제소를 하면 바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분쟁당사국들은 분쟁해결과 관련된 consultation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WTO에 ‘분쟁당사국이 무역협정을 어겨서 내가 손해를 보고 있는데 WTO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고 제소하면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30~60일 정도 조정 절차, 즉 협상을 통한 분쟁문제 해결을 유도합니다. 이 협상이 결렬될 경우 WTO은 제 삼자(third party)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을 만들어 제소된 분쟁을 심의하고 판결을 합니다. 사실 판결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panel report를 만들어서 당사국들한테 이를 알려주는데, 당사국들이 이 report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상고(appeal)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응하여 appellate body라는 대법원 같은 기구가 존재합니다.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도 이 WTO appellate court의 상임멤버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appellate body에서도 report가 받아들여진 경우 분쟁당사국들은 이 report를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를 부정하기 위해선 WTO의 모든 국가가 그 결정은 틀렸다고 동의하는 투표를 하지 않는 한 거부가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마지막 상고절차까지 통과한 report에 대한 거부를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내려진 판결 내지 report에도 불구하고 피제소국이 협정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협정불이행을 제소한 국가는 동일한 수준의 협정불이행, 즉 무역제제를 피제소국에 가할 수 있습니다.

WTO의 분쟁해결절차에 1995년부터 2016년 말까지 514개의 무역분쟁이 제소되었고, 이 분쟁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WTO웹사이트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WTO에 제소된 분쟁의 경제적 중요성과 관련하여 Bown and Crowley는 평균적으로 0.5%의 세계무역이 WTO 제소된 분쟁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0.5%밖에 안 되니까 WTO 분쟁 및 그 분쟁해결절차가 세계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를 WTO

에 제소할 때는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한 후 제소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고민을 하고, 제소 전 협의를 통한 분쟁해결도 일어나면 결국 일부의 분쟁만 WTO에 제소가 됩니다. WTO에 제소되지 않는 잠재적인 무역분쟁은 제소된 분쟁보다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며, 만일 잠재적인 무역분쟁 중 10% 이하만 WTO 제소로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분쟁 중에 있는 상품이 전 세계 무역의 5~10%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WTO에 제소되지 않은 무역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WTO분쟁절차는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무역분쟁 당사국들의 분쟁해결을 위한 협상을 하는 경우 협상이 결렬되어 WTO에 제소되는 경우 어떤 결과를 예측하는가에 따라 협상의 내용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WTO에 제소된 분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세계무역량은 0.5%이지만, WTO 분쟁해결절차는 전 세계의 무역분쟁 및 무역분쟁의 해결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4.1.1. 무역협정의 이행과 WTO의 역할에 대한 이론: 반복게임이론 적용

무역협정의 이행과 WTO역할에 대한 이론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아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크게 3~4가지 그룹으로 이제까지 발전되었던 이론들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 • Repeated game with incomplete information

첫 번째는 불완전 정보(incomplete information)하의 반복게임에 바탕을 둔 이론들입니다. 불완전 정보를 모형에 도입하는 이유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가 간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반복 게임 하에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역분쟁과 관련된 불완전 정보는 무역상대국이 무역보호수준을 높일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광우병 때문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할 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정부가 미국산 소고기 수입금지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압박이 너무 커서 수입을 할 수 없는 것인지 혹은 이러한 정치적 압박을 핑계삼아 자국 축산업을 위한 무역보호조치를 남용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완전한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Bagwell and Staiger(2005)와 Martin and Vergote(2008)의 연구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국가 간의 non-distortional transfer, 즉 한 국가가 특정산업을 이만큼 보호하는 대신 무역상대국이 이 보호무역조치 때문에 손해를 보는 만큼의 돈을 지불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무역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에 보호무역정책을 시행하는 대가로서 돈을

지불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치·외교적인 고려 때문일 수도 있지만 무역분쟁의 해결방법으로서 국가 간 현금지급이 사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이론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호무역조치와 관련한 국가 간 이전(transfer)은 한 국가의 보호무역조치에 대응하여 무역상대국도 보호무역조치를 취함으로써 일어납니다. 앞서 보수표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두 국가 모두 보호무역조치를 하게 되면, 한쪽만 보호무역조치를 취하는 경우보다 보호무역조치로 대응하는 국가의 payoff가 올라가서 국가 간 간접적 이전(indirect transfer)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접적 이전은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자원의 배분을 왜곡하는 것에서 오는 손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용이 드는 이전(costly transfer)이라고 할 수 있죠. Beshkar(2010)의 논문은 이러한 ‘tariff-tariff scheme’을 일종의 ‘costly transfer scheme’으로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incomplete information 존재 때문에 파레토 효율적인 무역협정의 이행은 불가능해지지만, 정보력이 있는 분쟁해결기구의 존재가 좀 더 효율적인 무역협정의 이행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 Repeated game with imperfect information(concealed trade barriers)

앞서 보호무역조치의 사용과 관련된 불완전 정보(incomplete information)가 있는 경우 무역분쟁의 해결문제를 논의했는데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결함이 있는 정보(imperfect information)의 경우도 있습니다. 무역상대국이 숨겨진 무역장벽(concealed trade barrier)을 이용하는 보호무역조치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하고 기업들이 공모를 하거나 기업들끼리 공모를 하여 외국기업의 수출을 비밀리에 막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 미국이 본국의 자동차수출이 일본으로 충분히 되지 못하는 이유로 이러한 숨겨진 무역장벽의 존재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보호무역조치에 대해 결함이 있는 정보밖에 없는 경우에도 Riezman(1991)의 논문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방아쇠 전략(trigger strategy)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협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수입량이 어느 기준치 이하로 내려가면 무역전쟁을 시작하는 방아쇠 전략을 채택하는 경우 이러한 무역전쟁의 촉발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숨겨진 무역장벽의 사용을 자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의 특징은 국가 간 무역제재 혹은 무역전쟁이 숨겨진 무역장벽의 이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역분쟁과 관련되어 가끔씩 일어나는 무역제재조치는 보호무역조치에 대해 결함이 있는 정보밖에 없는 경우 이러한 보호무역조치를 억제하

기 위한 필요악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러한 무역제재조치의 비용과 관련하여 Hungerford(1991)의 논문은 GATT·WTO의 분쟁해결절차가 오히려 효율적인 분쟁해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 반면 Kovenock and Thursby(1992)는 GATT·WTO의 분쟁해결절차가 협정불이행과 관련된 국제적 평판(reputation) 비용을 발생시켜 더 높은 수준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니다.

제 논문인 Park(2011)도 각국이 무역상대국의 숨겨진 무역장벽에 대한 결함이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를 분석하지만, 이러한 정보가 수입량과 같은 공적인(public) 정보가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사적 정보인 경우를 분석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기업이 미국에 특정상품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수출이 잘 안 됩니다. 품질도 좋고 가격 경쟁력도 있는 상품의 수출이 어려운 이유가 숨겨진 무역장벽의 존재 때문일 수가 있는데, 특정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증명할 수 있는 생산비용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적으로 노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기업 내지 미국정부가 숨겨진 무역장벽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펴기 위하여 해당기업은 생산비용과 사적정보의 일부를 본국정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에 근거하여 본국정부가 숨겨진 무역장벽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는 경우에도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해당기업에게 큰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국은 무역상대국의 숨겨진 무역장벽에 대한 결함이 있는 사적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적인 정보는 수입량과 같은 공적인 정보에 비해 숨겨진 무역장벽에 대한 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입량은 여러 우연적이고 파악하기 힘든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사적인 정보는 보다 많은 정보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결함이 있는 사적 정보이기 때문에 숨겨진 무역장벽의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반복게임의 방아쇠 전략의 구조에 대해 제한들을 주게 됩니다. Park(2011)은 무역당사국들이 결함이 있는 사적정보에 근거하여 숨겨진 무역장벽에 대한 무역제재를 사용하는 경우 이용될 수 있는 무역제재가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입니다. 특정 국가의 편에 설 이유가 없는 WTO가 숨겨진 무역장벽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에 근거하여 무역제재를 허용하는 경우, 비록 이러한 정보가 사적인 정보와 마찬가지로 결함이 있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숨겨진 무역장벽의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무역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무역협정의 이행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 Multilateral repeated Game with asymmetric Countries

Maggi(1999), Bowen(2013), Limao and Saggi(2013), 그리고 Bagwell *et al.*(2006, 2007) 논문들은 다양한 다자간 처벌(multilateral punishment)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자간 무역체제에서 국가간 비대칭이 존재할 때, 작은 국가들이 큰 국가들에 비해서 무역협정의 이행에 있어서 여러 이유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자간 처벌 메커니즘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분석하는 논문들입니다.

• Renegotiation proofness and WTO 분쟁해결기구의 역할

Ludema(2001)와 Klimenko *et al.*(2008)의 논문은 renegotiation proofness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WTO가 분쟁 해결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합니다.

4.1.2. 무역협정의 이행과 WTO의 역할에 대한 이론: 불완전 계약이론

무역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WTO의 역할에 대한 보다 최근의 연구들은 불완전한 계약이론(incomplete contract theory)을 이용하고 있고, Maggi and Staiger(2011, 2015), Beshkar(2016), Beshkar and Park(2016)이 이러한 논문들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러한 분석의 특징들을 몇 가지만 논의하겠습니다. 이 논문들은 기존의 불완전 계약 이론을 무역협정의 이행문제에 단순히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계약이론은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의 non-distortional transfer가 가능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내가 만약에 계약을 어기게 되는 경우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발생된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하도록 하면 무역협정의 이행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간에는 이러한 협정의 불이행과 관련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협정불이행에 대한 반대급부로 무역체제를 허용하는 형태의 비용의 발생하는 지급(costly transfer)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무역협정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재협상이 빈발합니다. 무역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이러한 특수성들은 기존의 불완전한 계약이론에서 도출되었던 결과들과 매우 다른 결과로 이어지며 새롭게 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불완전한 계약이론을 무역협정에 적용하는 이론들은 아직 매우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실증분석은 더욱 부족한 상황입니다.

## 5. 맺음말

국제무역체제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간략한 논의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 5.1. 반덤핑 관세와 관련된 연구

반덤핑 관세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반덤핑 관세는 많은 국가들이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임의 보호(contingent protection)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특징은 최혜국 대우, 즉 모든 국가에 다 동일하게 보호장벽을 적용할 필요가 없고, 덤핑 관세의 부과단위가 개별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일본에서 수출을 하는 여러 기업들이 모두 덤핑을 한다고 판정하더라도, 개별 일본 기업에게 부과하는 덤핑 관세는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덤핑관세의 계산이 적절히 이루어진 경우 미국에 제품을 수출한 기업들의 이윤 마진(profit margin)을 간접적으로 도출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덤핑 관세율에 대한 정보는 미국 정부의 ‘Federal Register’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질적 기업모형에 근거한 덤핑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근거하여 기업별 덤핑 마진률에 대한 예측을 한 후 이를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이질적 기업모형을 검증하는 방법으로도 덤핑 관세 부과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5.2. TRIPS와 관련된 연구

TRIPS에 관해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내생적 성장(endogenous growth), FDI 이론 등에 기반을 둔 이론과 실증분석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지적 재산권 거래(intellectual property right transaction)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현재 혁신동력(innovation engine)의 일정부분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과 같은 기존의 선진국에서 신흥국인 한국과 대만 등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매우 빠른 속도로 혁신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변화들이 어떻게 오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며 이와 관련된 국제지적재산권 분쟁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등의 주제들은 모두 흥미로운 연구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5.3. Mega FTA의 등장과 다자간 무역체제

끝으로 Mega FTA의 확대와 관련하여 간략히 언급하겠습니다. TPP와 같은 Mega FTA협정은 WTO 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무역 자유화 정책을 도입하는 한편, 협상의 대상을 투자 정책, 노동 기준의 도입 등으로 넓힘으로서 통상정책의 외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WTO체제와 상충되는 규정·규칙의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 경우 과연 ‘WTO와 같은 다자간 무역체제가 앞으로 Mega FTA의 확대와 맞물려서 어떤 식으로 변해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심층 연구는 아직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국제무역체제와 관련해서는 연구주제가 매우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전화: (02) 880-6329  
팩스: (02) 886-4231  
E-mail: j-hpark@snu.ac.kr

### 참고문헌

- Amador, M., Bagwell, K.(2013): “The Theory of Optimal Delegation with an Application to Tariff Caps,” *Econometrica*, **81**, **4**, 1541-1599.
- Antràs, P. and Chor, D.(2013): “Organizing the Global Value Chain,” *Econometrica*, **81**, **6**, 2127-2204.
- Antràs, P. and Staiger, R.W.(2012): “Offshoring and the Role of Trade Agreement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102**, **7**, 3140-3183.
- Bagwell, K. and Staiger, R.W.(2017, forthcoming): *Handbook of Commercial Policy*, Vol. 1, Elsevier.
- \_\_\_\_\_.(1999): “An Economic Theory of GATT,” *American Economic Review*, **89**, **1**, 215-248.
- \_\_\_\_\_.(2005): “Enforcement, Private Political Pressure, and the GATT WTO Escape



- Clause,” *Journal of Legal Studies*, **34**, **2**, 471-513.
- \_\_\_\_\_.(2011): “What Do Trade Negotiators Negotiate about? Empirical Evidence from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101**, **4**, 1238-1273.
- Bagwell, K., Staiger, R.W. and Yurukoglu, A.(2015): Multilateral trade bargaining: A First Look at the GATT Bargaining Records, No. w21488,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Baier, S.L. and Bergstrand, J.H.(2001): “The Growth of World Trade: Tariffs, Transport Costs, and Income Similarity,”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53**, **1**, 1-27.
- Beshkar, M.(2010): “Trade Skirmishes and Safeguards: A Theory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s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82**, **1**, 35-48.
- \_\_\_\_\_.(2016): “Arbitration and Renegotiation in Trade Agreements,”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p.eww001.
- Beshkar, M., Park, J-H.(2016): Imperfect Monitoring and Settlement, Mimeo.
- Beshkar, M., Bond, E.W. and Rho, Y.(2015): “Tariff Binding and Overhang: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97**, **1**, 1-13.
- Bown, C. P., Crowley, M. A.(2013): “Import Protection, Business Cycles, and Exchange Rates: Evidence from the Great Recessio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90**, **1**, 50-64.
- Bowen, T. R.(2013): *Forbearance in Optimal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Mimeo.
- Broda, Christian, Limao, N., and Weinstein, D. E.(2008): “Optimal Tariff and Market Power: the Evidence,” *American Economic Review*, **98**, **5**, 2032-2065.
- Dixit, A.(1987): “Strategic Aspects of Trade Policy,” in Bewley, T. (ed.), *Advances in Economics Theory: Fifth World Congres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ngerford, T.(1991): “GATT: A Cooperative Equilibrium in a Noncooperative Trading Regim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31**, 357-369.
- Johnson, R.C. and Noguera, G.(2014): A Portrait of Trade in Value Added over Four Decades, Dartmouth College, Unpublished Manuscript.
- Klimenko, M. M., Ramey, G., Watson, J.(2008): “Recurrent Trade agreements and the

- Value of External Enforce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74**, **2**, 475-499.
- Kovenock, D., Thursby, M.(1992): “GATT, Dispute Settlement and Cooperation,” *Economics & Politics*, **4**, **2**, 151-170.
- Krugman, P.R., Obstfeld, M. and Melitz, M.(2015): *International Economics: Theory and Policy*. Pearson Education India.
- Limão, N., Saggi, K.(2008): “Tariff Retaliation versus Financial Compensation in the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76**, **1**, 48-60.
- \_\_\_\_\_.(2013:) “Size Inequality, Coordination Externalities and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European Economic Review*, **63**, 10-27.
- Ludema, R. D.(2001): “Optimal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and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7**, **2**, 355-376.
- Maggi, G.(1999): “The Role of Multilateral Institutions in International Trade Cooper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89**, **1**, 190-214.
- Maggi, G. and Rodriguez-Clare, A.(1998): “The Value of Trade Agreements in the Presence of Political Press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6**, **3**, 574-601.
- \_\_\_\_\_.(2007): “A Political-Economy Theory of Trade Agreement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7**, **4**, 1374-1406.
- Maggi, G., Staiger, R.W.(2011): “The Role of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in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6**, 475-515.
- \_\_\_\_\_.(2015): “Optimal Design of Trade Agreement in the Presence of Renegotiation,” *American Economic Journal*, **7**, **1**, 109-143.
- Martin, A., Vergote, W.(2008): “On the Role of Retaliation in Trade Agreement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76**, **1**, 61-77.
- Ossa, R.(2012): “Profits in the “New Trade” Approach to Trade Negotiation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102**, **3**, 466-469.
- Park, J-H.(2011): “Enforcing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with Imperfect Private Monitoring,” *Review of Economic Studies*, **78**, **3**, 1102-1134.
- Riezman, R.(1991): “Dynamic Tariff with Asymmetric Inform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30**, 267-283.

Yi, K.M.(2003): “Can vertical specialization explain the growth of world trad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1**, **1**, 52-102.

